

## 홋카이도가 드리는 당부

###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8/2 (월) ~ 8/31 (화)

#### 조치구역 : 삿포로시

- ▶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 ▶ 음식점 등의 영업은 5시부터 20시까지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 ▶ 불필요한 다른 도부현으로의 이동은  
엄히 삼간다.

#### 그 이외의 시정촌

- ▶ 감염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을 경우,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 ▶ 삿포로시와의 불필요한 왕래는 삼간다
- ▶ 불필요한 도도부현간의 이동은 엄히 삼간다

# 홋카이도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

**2021년 7월 31일**

## 실시내용

국가에 의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적용에 의거하여 샷포로 시내를 조치구역으로 지정하고 사람간 접촉 기회를 줄이기 위해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제31조의 6 및 동법 제24조 제9항에 따라 도민 등을 대상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동시에, 필요한 협력에 대한 조치를 호소 및 강구한다.

## 조치구역

샷포로시

※ 그 이외의 시정촌에서는 감염위험 회피를 위한 철저한 행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동법 제24조제9항에 따른 요청 등을 실시한다.

## 기 간

2021년 8월 2일 (월) ~ 8월 31일 (화)

조치구역

요청내용

- (일상생활에서)
  - ◆ 감염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델타주로의 전이가 진행되는 것을 상정하여 <3밀(밀폐·밀집·밀접)>,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5가지 경우※>> 등의 회피나 <사람간의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손 소독>을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음주를 수반하는 친목회 등, 대규모 인원이나 장시간에 걸친 음식 섭취, 마스크 없이의 대화,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 장소 이동
- (특히 외출할 때는)
  - ◆ 낮시간을 포함하여 불필요한※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특히 주말 외출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 식료품·의료품·생활필수품의 구입, 필요한 직장출근, 옥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주십시오. 아울러,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 일상적으로 행동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료와는 반드시 소수 인원으로 행동하며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해 주십시오.
  - ◆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한층 더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고령자, 기초질환이 있으신 분, 일부의 임신후기이신 분
  - ◆ 불필요한 도도부현간의 이동을 엄히 삼간다.(특조법제24조제9항)
    - ※ 홋카이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는 것 이외에도 체온 체크나 필요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또, 이동처에서는 <3밀> 회피를 포함한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다수인원(5명 이상)의 회식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삿포르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모든 분께 드리는 협력의뢰】

협력의뢰 내용

- ◆ 불필요한 귀성이나 여행 등, 홋카이도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엄히 삼가도록 요구되고 있다. 홋카이도로의 이동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출발 전에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관리를 철저히 한다.
  - ※ 국가차원에서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네다, 나리타, 이타미, 간사이, 후쿠오카의 각 공항에서 홋카이도로 향하는 이용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서 무료 PCR 검사·항원 정량 검사를 실시.

## 요청내용

(특히, 음식을 섭취할 때는)

- ◆ 20시이후, 음식점 등을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다. (특조법제31의6제2항)
- ◆ 감염방지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 제9항)
- ◆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음식점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한다 (특조법제24조 제9항)
- ◆ 노상·공원 등에서의 집단음주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가능한 한 동거하고 있지 않는사람과의 음식섭취를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음식점 등에 대한 요청】

## 대상시설

【음식점】 음식점(주점 포함), 카페 등 (배달·테이크아웃 제외)  
 【유흥시설】 카바레, 노래방 등에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결혼식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결혼식장

## 요청내용

-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 (특조법제31조의6제1항)
- ◆ 주류제공(이용자에 의한 주류 점내반입 포함) 을 하지 않는다. (특조법제31조의6제1항)
- ◆ 다음의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한다. (특조법제31조의6제1항)
  - 종원원들의 검사 장려 ·입장자의 정리·유도
  - 발열, 기타 증상이 있는 사람의 입장금지
  - 손 소독 설비의 설치 ·사업장 소독
  - 마스크 착용 및 기타 감염 방지에 관한 조치의 주지
  -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자의 입장금지(이미 입장한 사람의 퇴장 포함)
  - 시설 환기
  - 아크릴판 등의 설치 또는 이용자의 적절한 거리 확보 등 비말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 강구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확인 앱(COCOA) 및 훗카이도 코로나 통지 시스템의 활용 호소
  - 동일그룹의 입점은 원칙적으로 4인 이내
  - 체재시간의 제한(2시간 정도를 기준) 등으로 동시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한다.
  - 가게안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침묵식사~식사는 조용히, 대화는 마스크~의 실천) 등
- ◆ 음식제공이 주된 영업인 점포등에서는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특조법제31조의6제1항)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금】 (8월2일 ~ 31일까지 전기간 (30일간) 협력해 주신 경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한 점포당 90만엔 ~ 300만엔, 대기업: 한 점포당 최대 600만엔

## 【이벤트의 개최에 대한 요청】

인원수  
상한 및  
수용률  
(※1)

○ 인원수 상한

5,000명

○ 수용률

[10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 (※2)

[ 5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성원 등이 상정되는 경우 (※3)

※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는 무관객·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와 더불어,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1 인원수 상한과 수용률에서 어느 쪽이든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2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연극 등, 무용, 전통예능, 예능·연예, 공연·식전, 전시회 등, 음식섭취를 수반하는 발성이 없는 행사(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감염 방지책이 담보되고 이벤트 중에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큰 소리로의 환호·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취급할 수 있다.)

※3 록, 팝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공연경기, 공연, 라이브하우스·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 (다른 그룹 간에는 좌석을 1석씩 비우고, 동일그룹 (5명 이내에 한함)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두지 않아도 됨, 즉 수용률은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영업시간은 21시까지 (무관객으로 개최되는 행사 제외). (특조법제24조제9항)
- ◆ 주류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 포함) 을 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 ◆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행사 전후의 3밀 및 음식섭취를 방지하는 조치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 국가의 접촉확인 앱 (COCOA) 도입, 명부작성 등 추적대책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 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혹은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행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전국적인 이동이 전망되는 것은 개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 (협력의뢰)

※ 8월 2일까지 판매된 티켓에 한해 위의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티켓은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8월 3일 이후에는 위의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티켓의 신규판매를 중지할 것.

※ 9월 1일 이후에 개최될 예정인 이벤트에 대해서도 본 대책기간 중에는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는 티켓의 신규판매를 중지할 것.



## 【사업자에게 드리는 요청 · 협력의뢰】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직장출근 등에 대해서 「출근자수의 **70%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간 접촉기회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텔레워크) 나 출근이 필요한 직장에서도 로테이션 근무등을 철저히 한다. (협력의뢰)
- ◆ 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한다. (협력의뢰)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주요 관광시설 등의 라이트업이나 변화가의 옥외광고 등에 대해서 **20시** 이후, 야간 소등한다. (협력 의뢰)
- ◆ 시영교통 (지하철 · 노면전차) 에 대한 막차 단축운행이나 주요 터미널 (오도리역, 삿포로역) 에서의 체온검사를 실시한다 (협력의뢰)
- ◆ 다른 교통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지막 운행편의 단축 등의 대응을 검토한다 (협력의뢰)

## 【학교에 드리는 요청】

## 요청내용

- ◆ 위생관리 매뉴얼 (2021.4.28 개정) 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 학생기숙사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 실시를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학급·학년·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학교행사 (운동회, 체육제, 수학여행, 숙박학습 등) 를 중지, 연기, 축소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에서는 통근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차통학을 실시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은 활동을 엄선 (시간, 인원수, 장소 등) 하여,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한다. 또한, 건강 상태의 다중 체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감염방지 대책의 전교 지도 체제를 확립한다. 더불어, 각 경기단체 등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지 않는 대외경기 등은 자제한다. (특별조치법 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등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나 학급 분할수업 등의 실시로 3밀을 회피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공립시설】

## 공립시설

- ◆ 원칙상 휴관하도록 한다.

## 【음식점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요청·협력의뢰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시설】

요청·  
협력의뢰  
내용

시설종류	내역	요청·협력의뢰내용
상업시설	대규모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의 물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생활필수물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li> <li>◆ 정리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공지한다. (협력 의뢰)</li> </ul>
유기시설	파칭코점, 게임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시간은 <b>5시부터 20시까지</b>로 한다. (협력의뢰)</li> <li>※ 대규모 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 물품판매업을 하는 점포 중 생활필수물자를 제외한다</li> </ul>
유흥시설	성풍속점, 경마투표권발매소, 장외경마(경차·경정)권발매장 등	
서비스업	대중목욕탕, 피부관리실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점포 (생활필수서비스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매장 내 반입 포함) 하지 않는다. (협력 의뢰)</li> <li>◆ 노래방 설비를 이용을 실시하지 않는다. (협력의뢰)</li> </ul>

【음식점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요청·협력의뢰②이벤트에 준한 조치를 요청하는 시설】

요청·  
협력의뢰  
내용

시설 종류	내역	요청·협력의뢰내용
극장 등	극장, 관람장, 영화관, 공연장, 플라네타륨 천문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li> <li>◆ 정리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공지한다. (협력의뢰)</li> </ul>
집회· 전시시설	집회장, 공회당, 전시장, 대여 회의실, 문화회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수 상한 <b>5000명</b>, 동시에 수용률 <b>100%</b> 이내(성원 등 큰 소리 없음), <b>50%</b> 이내(성원 등 큰 소리 있음) (특조법제24조제9항)</li> </ul>
호텔·여관	호텔, 여관(집회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시간은 <b>5시부터 20시까지</b> (이벤트 개최의 경우는 <b>21시까지</b>) 로 한다. (협력의뢰)</li> </ul>
운동시설, 유기시설	야구장, 육상경기장, 스포츠클럽, 테마파크, 유원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관은 <b>5시부터 21시까지</b>로 한다. (협력의뢰)</li> </ul>
박물관 등	박물관, 미술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매장 내 반입 포함) 하지 않는다. (협력 의뢰)</li> <li>◆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협력의뢰)</li> </ul>

그 이외의 시정촌

【도민 및 도내에 체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요청①】

요청내용

( 일상생활에서 )

- ◆ 감염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델타주로의 전이가 진행되는 것을 상정하여 <3밀(밀폐·밀집·밀접)>,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5가지 경우※>> 등의 회피나 <사람간의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손 소독>을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음주를 수반하는 친목회 등, 대규모 인원이나 장시간에 걸친 음식 섭취, 마스크 없이의 대화,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 장소 이동

( 특히 외출할 때는 )

- ◆ 감염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 식료품·의료품·생활필수품의 구입, 필요한 직장출근, 옥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주시요. 아울러,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 일상적으로 행동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료와는 반드시 소수 인원으로 행동하며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해 주시요.
- ◆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 접촉하는 경우,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한층 더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고령자, 기초질환이 있는 분, 일부의 임신후기인 분
- ◆ 삿포로시와의 불필요한 왕래를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불필요한 도도부현간의 이동을 엄히 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홋카이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도 체온 체크나 필요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이동처에서는 <3밀> 회피를 포함한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다수인원(5명 이상)의 회식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홋카이도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협력의뢰】

협력의뢰  
내용

- ◆ 불필요한 귀성이나 여행 등, 홋카이도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엄히 삼가도록 요구되고 있다. 홋카이도로의 이동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출발 전에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관리를 철저히 한다.

※국가차원에서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네다, 나리타, 이타미, 간사이, 후쿠오카의 각 공항에서 홋카이도로 향하는 이용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서 무료 PCR 검사·항원 정량 검사를 실시.

## 【도민 및 도내에 체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요청②】

## 요청내용

(특히, 음식을 섭취할 때는)

- ◆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음식점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한다 (특조법제24조 제9항)
- ◆ 노상·공원 등에서의 집단음주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식사는 4명 이내 등 소수인원으로, 단시간에, 과음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대화시에는 마스크 착용 (「침묵식사 ~ 식사는 조용히, 대화는 마스크~」의 실시) (특조법제24조제9항)

【이벤트의 개최에 대한 요청】

인원수  
상한 및  
수용률  
(※1)

○ 인원수 상한(어느쪽이든 큰 쪽)  
5,000명 또는 수용인수 50% 이내 (10,000명 이내)

특조법제24조제9항

○ 수용률  
[10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 (※2)  
[ 5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성원 등이 상정되는 경우 (※3)

※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는 무관객·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와 더불어,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1 인원수 상한과 수용률에서 어느 쪽이든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2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연극 등, 무용, 전통예능, 예능·연예, 공연·식전, 전시회 등, 음식섭취를 수반하는 발성이 없는 행사(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감염 방지책이 담보되고 이벤트 중에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큰 소리로의 환호·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취급할 수 있다.)

※3 록, 팝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공연경기, 공연, 라이브하우스·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 (다른 그룹 간에는 좌석을 1석씩 비우고, 동일그룹 (5명 이내에 한함)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두지 않아도 됨, 즉 수용률은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이벤트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행사 전후의 3밀 및 음식섭취를 방지하는 조치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 국가의 접종확인 앱(COCOA) 도입·명부 작성 등 추적대책을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 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혹은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이벤트의 실시에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전국적인 이동이 전망되는 것은 개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 (협력의뢰)
- ◆ 이벤트 관련 시설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시 이벤트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인원수 상한, 수용률 등의 내용을 준수한다. (협력 의뢰)

※ 8월 2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티켓의 신규판매를 중지할 것.

※ 9월 1일 이후에 개최될 예정인 이벤트에 대해서도 본 대책기간 중에는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는 티켓의 신규판매를 중지할 것.



## 【 사업자에게 드리는 요청 · 협력의뢰 】

요청 ·  
협력의뢰  
내용

- ◆ 직장 출근 등에 대하여 「출근자수의 **70%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간 접촉기회를 줄이기 위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나 출근이 필요한 직장에서도 로테이션 근무 등을 한층 더 철저히 한다. (협력의뢰)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학교에 드리는 요청】

## 요청내용

- ◆ 위생관리 매뉴얼 (2021.4.28 개정) 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 학생기숙사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학급·학년·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은, 활동을 엄선 (시간, 인원수, 장소 등) 하여 감염증 대책을 철저히 한 후 실시 하고, 이러한 대책이 어려운 경우는 중지한다. 또한, 건강상태 다중체크를 함과 동시에 감염증 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한다. 더불어, 각 경기단체 등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지 않는 대외경기 등은 자제한다. (특별조치법 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나 학급분할 수업 등의 실시에 의해 밀접접촉을 방지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공립시설】

## 공립시설

- ◆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지역의 감염 상황에 따라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